

의안번호	제 132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

발 의 자	강태원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7년 7월 2일

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
(강태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년 7월 2일

발 의 자 : 강태원 · 연만흠 · 박재국 · 이필용

김환동 · 조영재 · 이종호(7인)

제정이유

- 가. 법제처는 법령 제명 붙여쓰기는 국민의 언어생활 현실과의 괴리 및 어문규범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2005.1.1부터 「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- 나. 우리도의 경우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혼용되고 있어 도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처의 「법령 띄어쓰기 기준」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되 부서별로 추진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명칭은 「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, 법제처의 「법령입안심사기준」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사용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명을 별표와 같이 일괄하여 개정.

나.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(자치법규 포함)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(「」)를 사용하도록 함(안 제3조).

다.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하여 입법의 경제성·효율성 및 통일성을 확보함(부칙 제2항).

참고자료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조례 제명을 「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」 및 법제처의 「법령입안심사기준」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도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일괄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제명 띄어쓰기) 충청북도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의 「법령입안심사기준」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하며, 그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.

제3조(인용 법령의 표시)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(자치법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명칭은 낫표(「」)를 사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개정된 것으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 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4조(운영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